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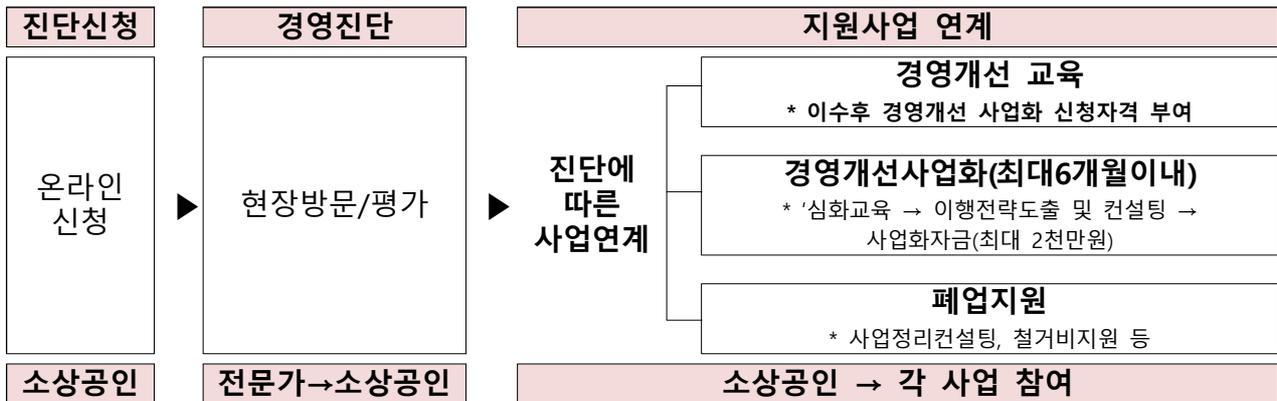
2023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 지원대상 모집공고

충남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또는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 사업기간** : '23. 3. 31. ~ '23. 11. 15.
-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 지원절차**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경영진단	• 경영진단
경영개선 교육	• 경영진단+경영개선교육(30Hr)
경영개선 사업화	• 경영진단+특화교육(10h)+개선전략 수립(멘토링)+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원)

모집규모 : 총179명 내외

지원대상	사업화지원 유형	지원규모
경영위기 소상공인	경영진단	179업체
	경영개선 교육	61업체
	경영개선 사업화지원	110업체(국비 61업체, 도비 49업체)

2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3. 3. 31.(금) ~ '23. 4. 28.(금), 17:00 (기한 엄수)

* 신청 마감시간에는 사용자 폭주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요망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신청지역 :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참고1] 소상공인 확인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자동신청취소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참고2]

2.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가능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5.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6.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7. '21년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8. '22년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0.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1. **충남도 및 도내 15개 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유사분야 중복지원 불가**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 ①매출액 감소, ②저신용자, ③~⑥최근 3년간 특별재난지역 선포, 고용위기 등 특별지정지역 소재, ⑦코로나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23.3.31.)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참고1] 확인필수
- ▶ [참고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아래 ①~⑦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증빙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자 (③~⑥의 경우 관련부처의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변경적용 될 수 있음)

① 매출액 감소

-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

<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구분	개업시기*	감소 판단 기준	매출액 감소 확인
전년대비 20%감소	~'21년 말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2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2년 중	'22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3년 1분기 매출액 확인가능 서류 (카드·현금 매출 증빙자료, POS매출액 합계자료 등)
	'23.1.1~	매출감소 대상 제외	
3년간 연속감소	~'20년 말	'20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년차)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3년차) '22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1년 중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년차) '22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2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3년차) '23년 1분기 매출액 확인가능 서류 (카드·현금 매출 증빙자료, POS매출액 합계자료 등)
	'22.1.1~	매출감소 대상 제외	

*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 분기별 국세청 신고매출액은 월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단위) 환산 적용 (예 : '21년 7월 개업 사업체(6개월 영업) → '21년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매출액의 2배)

② 저신용자

-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44점 이하인 자(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③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18호, 제2020-21호, 제2021-75호, 제2021-93호, 공고 제2023-88호

지정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18.3.21.~'23.3.20.	해당없음
'20.2.27.~'25.2.26.	해당없음
'21.9.9~'23.9.8.	해당없음
'21.12.30.~'23.12.29.	충남1(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23.1.26.~'25.1.25	해당없음

④ 고용위기지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7호

지정기간	고용위기지역
'23.1.1.~'23.12.31.	해당없음

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42호, 제2022-328호, 제2022-904호

지정기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21.5.29.~'23.5.28.	해당없음
'22.4.5.~'23.4.4.	해당없음
'22.10.31.~'24.10.30.	해당없음

⑥ 특별재난지역

- 최근 3년간('20~'2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선포연도	특별재난지역
'20년(코로나)	해당없음
'20년(호우)	(1차) 충남 아산시·천안시 (3차) 충남 금산군·예산군
'20년(태풍)	해당없음
'21년(호우)	해당없음
'21년(태풍)	해당없음
'22년(산불)	해당없음
'22년(집중호우)	(시군구) 충남 부여군, 충남 청양군 (읍면동) 충남 보령시 청라면
'22년(태풍)	해당없음
'22년(이태원)	해당없음
(추가) '23년(산불)	충남 홍성군, 충남 금산군, 충남 당진시, 충남 보령시, 충남 부여군

⑦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 감소한('19년 대비 20% 이상) 소상공인

<코로나 경영위기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개업시기	감소 판단 기준	매출액 감소 확인
~'19년 말	'19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년차) '20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3년차)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4년차) '22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 '20년, '21년, '22년 매출이 '19년 대비 각각 20% 이상 감소

2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기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체크리스트 	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 협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서 	http://hope.sbiz.or.kr 서식 다운로드 → 작성 → 파일 업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1> 자기역량기술서 * 사업화 신청 시, 작성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2> 사업계획서 * 사업화 신청 시, 작성 및 제출 	
납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소상 공인 확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 FAX수신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③ 무인발급기 또는 지사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자: '22년도 1개년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경영위기 소상공인 증빙자료>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공통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선택 (택 1)	① (매출감소) 매출액 확인서류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단, '22년 1분기 매출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 직접제출(카드·현금 매출자료, POS매출액 합계자료 등)		
	② (저신용자) 신용점수 확인서류	① <u>개인신용평가기관 'NICE평가정보-신용보고서'</u> ② 본인확인 가능하며 신용점수 기재된 화면 캡처본 * 성명·신용점수·조회일자 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 ** 저신용자인 경우, 지원 자금(국비)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제한으로 미 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⑥ 해당하는 자는 각 항목별 지정기간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거나 소재하였음을 증빙하여야 함		
	③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④ 고용위기지역 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⑥ 특별재난지역	과거 소재 하였던 경우	(개인사업자)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재 소재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공통서류)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⑦ 코로나 경영위기 등 기타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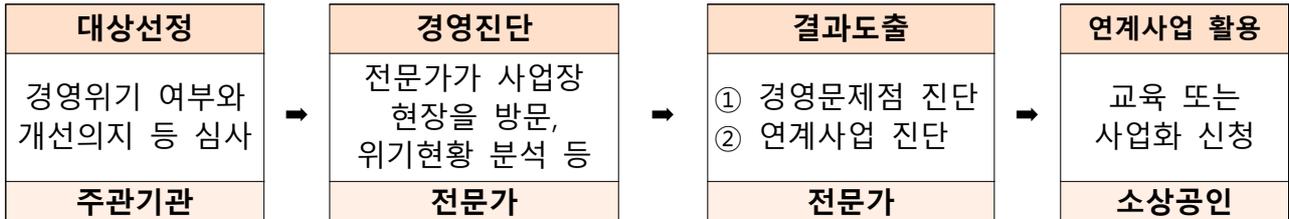
3

지원내용

* 세부적인 교육·자율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1 경영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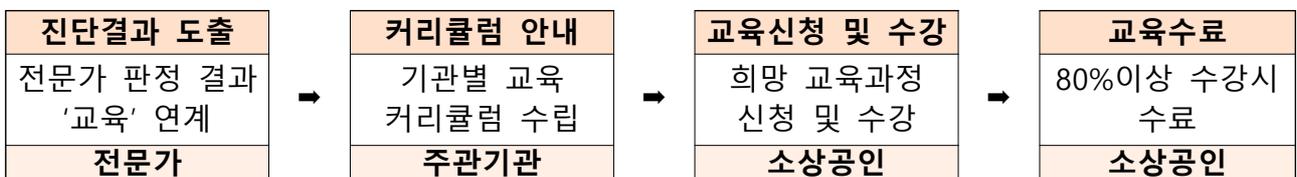
< 경영진단 추진절차 >



- **지원내용** : 주관기관별로 해당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 매칭 및 현장방문 진단
 -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신청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진단
 - 진단결과에는 문제점 진단 및 개선 솔루션과 더불어 연계 지원 사업 판정이 포함되며, 진단결과에 따른 연계지원
 - 진단결과 '교육'으로 판정 → 경영개선 교육 지원(단, 교육수료자가 당해 사업화 신청 희망 시, 신청 자격만 부여)
 - 진단결과 '사업화' 판정 → 당해 사업화 모집만 신청하며 사업화 신청자는 평가를 통해 선정

2 경영개선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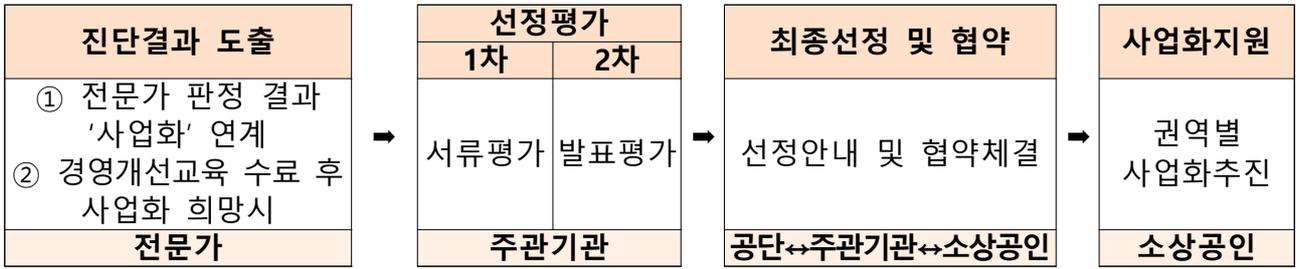
< 경영개선 교육 추진절차 >



- **지원내용** : 맞춤형 경영교육 및 마인드셋(mindset) 교육, 사업개선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실무형 이론·실습교육 등 교육 지원
 -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
 - 전체 교육시수(30Hr)의 80%이상 수강 시, 수료가능

3 경영개선 사업화

< 경영개선 사업화 추진절차 >



□ **지원내용** : 사업화 특화교육 + 성공멘토링 + 경영개선 자금(최대 2천만원) + 기관별 자율프로그램 등 패키지 지원

- 경영진단 결과, 연계지원이 '사업화' 판정 또는 '경영개선교육 수료자 중 사업화 희망 시' 자격부여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지원절차) 선정→교육→협약 및 사업비 교부→지원(멘토링,자금)
 - (특화교육) 참여자 수요 기반의 ①지원사업 운영교육, ②업종·아이템별 맞춤형 교육, ③선배기업 경영체험 등 소그룹 교육 등 추진(10Hr)
 - (협약 및 사업비 교부)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협약체결 후 국고 보조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 교부
 - (성공멘토링) 성공 소상공인 '선배멘토'와 이행전략 도출을 위한 '전담멘토'가 특화멘토링 제공(4~ 6회 이내)
 - (사업화자금) 경영개선 전략수립이행 및 사업화를 위해 최대 2천만원 (국비, 총사업비의 50%)까지 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 최대50%)

< 경영개선 사업화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4,000만원 (100%)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현물
		60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	1,400만원 (총 사업비의 35% 이하)

※ 정부지원금 규모는 선정자의 최종 평가 점수 및 사업화계획 적정성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금 규모(안) >

등급	지원금(천원)	규모(업체)		비고
		국비	도비	
합계		61	49	총 110업체 지원
A	20,000	18	19	
B	15,000	25	20	
C	10,000	18	10	

경영개선 사업화 자금 집행비목 및 유의사항

< 경영개선사업화 자금 집행비목 >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현금)	인증·평가	지재권, 인증취득(HACCP 등), 제품의 시험성적 의뢰 비용
	매장 모델링	사업자 소재지 상의接客시설 인테리어 등 매장 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정부지원금의 최대50% + 자기부담금 현금의 최대50%)
	브랜드 개발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개선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마케팅 홍보	판로개척·고객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스마트·디지털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스마트·디지털화에 소요되는 비용 * 단순 기성품(범용적 전자기기 등) 구매는 불가
	온라인 판로	상품화 한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
자기부담금 현물	인건비	대표 및 직원 인건비로 1인 1개월 201만원* 이내 * 최저임금 9,620원(1H)×월209시간(주40H+주당유급휴주8H)
	사업장임차료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임차에 대한 비용
	시설·설비	기성품 또는 제작 가능한 장비, 집기 등 구입비
	재료비	자산형성에 기여하지 않는 소모적인 재료비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

- **사업화 지원의 경우 충남도 및 도내 15개 시·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유사분야 중복지원 불가함**
-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으로 구성하며,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총 사업비의 50%이상을 본인 부담하여야 함(현금 및 현물)
- 사업비는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및 보조금전용카드로(현금 인출 불가) 집행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사업비 관리계좌 및 사업비 카드로 타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 관리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함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수행이나 지출에 대해서는 불인정 됨**
-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사업비는 이행전략보고서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집행 증빙자료 안내에 따라 제반 증빙서류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자기부담금 중 현물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사후증빙이 가능하나, 증빙자료 미제출 및 지원기준 제외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집행은 불인정 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지원사업의 목적 외(예: 다른 용도로 집행, 증빙자료 허위제출, 기타 주관기관이 목적 외 집행으로 판단한 경우 등)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사업비 집행 및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간 비정상적 및 부당행위 거래를 금지함**
* 사업화지원 대상자는 특수관계자 소속 기관·회사 등에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금지(정상거래 확인증빙 필수)
- *** 또한,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자나 연관 기관·회사 등을 매개로 거래 금지
- *** 특수관계자 거래 시, e-나라도움 집행내역 상시 모니터링(기획재정부)을 통해 부정수급(징후) 건으로 적발될 수 있으며, 전담기관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주관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집행내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영업일 기준) 보완하여야 함
-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또는 전담기관)이 추가서류 필요시 요청 할 수 있음

4

사업화 지원대상 선정

*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교육은 별도의 평가과정 없음

□ 평가절차 및 일정(안)

- 사업운영에 따른 일정은 지원 일정과 동일하게 추진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신청 및 선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20% 이내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 **선발통보** : 개별안내 예정

□ 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세부항목	배점
서류 평가	신청자 역량(30점)	○ 사업화 의지 및 전문성(추진의지, 관련경력 등)	20점
		○ 자기기술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10점
	사업화 아이디어(30점)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	20점
		○ 사업아이템의 확장 및 지속가능성	1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40점)	○ 사업 아이템 또는 업종으로의 사업화 가능성	1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 사업비 편성내역의 타당성	10점
	가점(8점)	○ 채무해소 성실상환 소상공인* - 공단 별도 확인	5점
		○ 친환경 업종 및 아이템 보유자, 증빙자료 제출 시 - 친환경인증서, 제품사진 등	3점
	계		108점
발표 평가	신청자 역량(20점)	○ 경영마인드(경영의지, 열정, 적극성 등)	10점
		○ 신청자의 전문성과 준비도(관련 자격증 소지 등)	10점
	지원 적합성(30점)	○ 지원동기 및 목표의 명확성	10점
		○ 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개선노력, 경영위기 원인분석 등)	20점
	사업 아이템(40점)	○ 사업화 계획의 현실성 및 재창업 가능성	10점
		○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 참신성 및 독창성	20점
		○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10점
	성장가능성(10점)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장가능성	10점
계		100점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을 통한 채무조정자 중 재기의사가 분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각 연계지원 사업별 공고일 기준 원리금을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미납사실이 없는 자
 - 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정보제공동의(성명, 연락처, 개인고유식별정보) 약정자에 한함

협약기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상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인가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4

유의사항

- 사업화 지원의 경우 충남도 및 도내 15개 시·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유사분야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연락불능, 미숙지 등) 으로 인한 불이익(미선정, 선정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선정통보 후, 주관기관이 정한 자부담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미제출한 경우, 사업취소로 간주하며 차 순위 지원대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사업비(국비 및 자부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운영지침 및 편람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선정대상자는 협약 기간 내에 사업화를 완료*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수행이나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는 불인정되며,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사업화 완료: 위기개선 전략과제 이행 및 협약기간 종료시점까지 영업유지
- 협약기간 내 폐업, 협약만료 후 1년 이내 폐업의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교부 및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수 등의 제재조치 및 민·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 충남보부상콜센터 041-424-4000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충남 주관기관 세부프로그램 안내

모집규모	경영진단	179명	경영개선 교육	61명	사업화 지원	110명 *국비: 61명, 도비: 49명
관할기관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문의처	041-424-4000	

○ 지원일정

신청접수	»	경영진단 (경영개선 교육 및 사업화 지원 판단)	»	경영개선교육 (경영진단 결과 '교육' 대상)	»	사업화 지원 (경영진단 결과 대상자 대상)
'23.3~'23.5		'23.4~'23.5		'23.6~		'23.6~

* 일정은 모집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프로그램(교육 및 컨설팅, 자율프로그램 등)

- 경영진단
- (경영진단 결과 '교육' 시) 경영개선 교육(30H)
- (경영진단 결과 '사업화 지원' 시) 사업화 지원(기본교육 10H, 사업화 지원금 지원, 멘토링 지원 등)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지원 등급별 지원단가(안)>

등급	지원금(천원)	규모(업체)		비고
		국비	도비	
합계		61	49	총 110업체 지원
A	20,000	18	19	
B	15,000	25	20	
C	10,000	18	10	

* 자금 총사업비 중 50%의 정부지원금(최대 2천만원), 50% 자부담(15% 이상 현금, 35% 이하 현물)

* **충남도 및 도내 15개 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유사분야 중복지원 불가**

- (자율프로그램 사업화 지원대상) 사업화 지원리빙랩지원, 라이브커머스지원, 글로벌화 준비 지원, 성과공유박람회 등

○ 유의사항

- 경영개선 지원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폐업 불가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서류 상의 하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접수서류가 미비할 경우, 주관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기관 미확인(연락 불능)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사업화지원 대상자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재등급

구분	제재 및 환수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지원 중단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미완료한 경우	3년	전액환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	면제	집행잔액 환수
	협약 이후 신청 또는 선정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전액환수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협약 해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이 지연·중단되거나 사업수행을 중도 포기한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 위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을 미준수하여 편성·집행한 경우 * 단순착오, 지침 미숙지의 경우 사업기간 이내에 한하여 해당금액 반납 처리 후 사업비 사용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1년	해당금액 환수
	완료보고서 및 관련 제출서류 미제출, 현장점검 등에 불응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 만료일까지 사업화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 종료 후 사업체 유지 의무(협약만료일로부터 1년)를 위반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전액환수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	면제	-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 수행이나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3년	해당금액 환수
사업비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불인정 금액 반납에 불응한 경우	5년	해당금액 환수
	사업비의 횡령, 편취, 유용, 목적 외 사용 * 선정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증빙자료 제출 및 타 지원사업과 중복제출 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카드결제 취소 등 사후 적발된 경우 포함 *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영구배제	전액환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 사업화지원 선정자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선정된 경우 등	영구배제	전액환수

참고1 소상공인 확인 기준 및 확인방법

1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¹ 중 소상공인²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³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③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2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예시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평균매출액등 : (2017년~2019년 매출액 합계) / 3



☞ 평균매출액등 : (2016년~2018년 매출액 합계) / 3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 평균매출액등 : (2018년~2019년 매출액 합계) / 2



☞ 평균매출액등 : (2017년~2018년 매출액 합계) / 2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 평균매출액등 : '19.05.16~'19.12.31 매출액(A) 연환산 (= (A/230일) × 365일)



☞ 평균매출액등 : ① + ②

① '19.08.16~'19.12.31 매출액(A) 반기환산 (= (A/138일) × 18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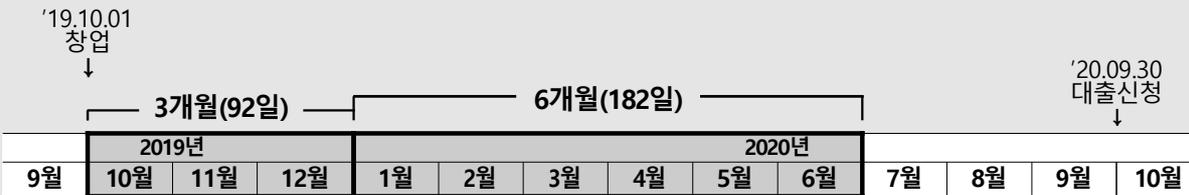
② '20.01.01~'20.06.30 매출액(B) 반기환산 (= B)

<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 평균매출액등

: '19.07.01~'19.12.31 매출액(A) 연환산 (= (A × 2) or { (A/184일) × 365일 })



☞ 평균매출액등 : ① + ②

① '19.10.01~'19.12.31 매출액(A) 반기환산 (= (A × 2) or { (A/92일) × 184일 })

② '20.01.01~'20.06.30 매출액(B) 반기환산 (= B)

<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



☞ 평균매출액등 : ((2020년 6월 2일 ~ 2020년 6월 10일 매출액 합계) / 9일) * 365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사례

2016년 창업한 A기업은 음료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2017년~2019년** 3년간 평균매출액은 110억원(음료제조업 분야에서 70억원, 도매업 분야에서 40억원)임. **2020년 6월에 대출을 신청한 A기업의** 소기업 해당 여부는?

1 주된 업종 판단

70억원(음료제조업)과 40억원(도매업)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주된 업종에 해당함

⇒ 음료제조업이 주된 업종

2 매출액 기준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A기업의 소기업 여부 판단에 적용할 업종은 '음료제조업'임을 확인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3 규모기준 충족여부 확인

3년 평균매출액 110억원과 업종별 기준인 120억원을 비교

⇒ 규모기준을 충족

4 소기업 적용기간 확인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2019.12.31.)에서 3개월이 경과한 '20년 4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에 해당

⇒ 적용기간 충족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소기업 해당여부 적용기간)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한 경우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소기업 여부 적용기간 예시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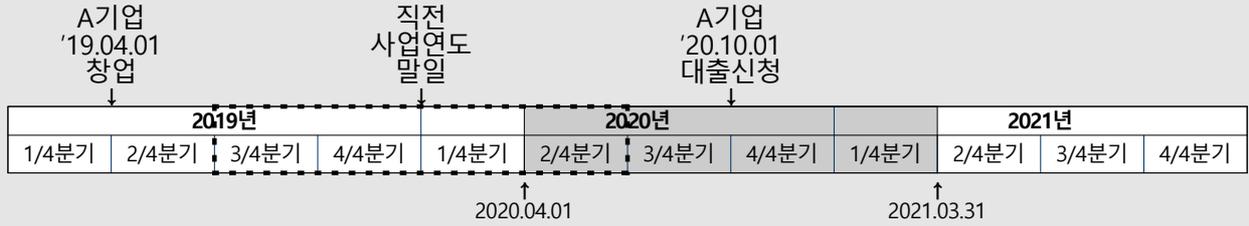


☞ A기업 2020년 09월 11일 대출신청 → A기업의 **3개년도(2017년~2019년)의 평균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 A기업 2020년 03월 11일 대출신청 → (2019년 결산 미확정) → **3개년도(2016년~2018년)의 평균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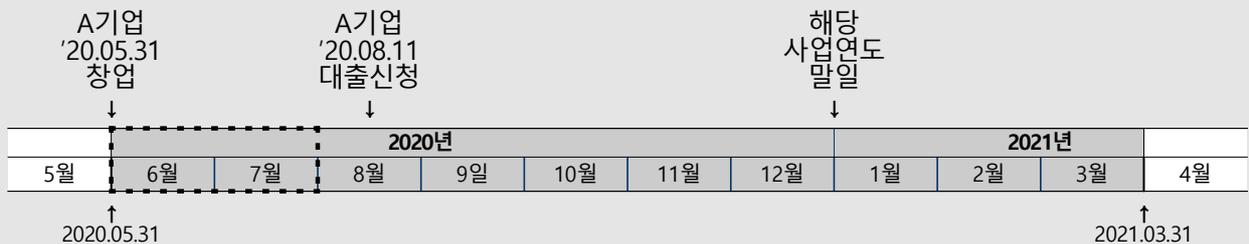


☞ A기업 2020년 10월 01일 대출신청 → 2019년 07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계산한 평균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 A기업 2020년 03월 01일 대출신청 → A기업 창업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환산한 평균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대출신청일이 직전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창업일부터 창업한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 A기업 2020년 08월 11일 대출신청 → A기업은 같은 해 2020년 05월 31일에 창업 → A기업의 2020년 6월~7월 매출액을 환산한 평균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0년 05월 3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③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 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참고사항>

<p align="center">근로자</p>	<p>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p>
<p align="center">임원</p>	<p>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이외의 기업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자 중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p>
<p align="center">일용 근로자</p>	<p>「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p>
<p align="center">3개월 이내의 근로자</p>	<p>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p>
<p align="center">연구 전담 요원</p>	<p>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외의 일반사무직은 상시근로자에 포함</p>
<p align="center">단시간 근로자</p>	<p>-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이 제외되었음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p>

㉓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④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 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 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p>■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p> <p>■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 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대출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p> <p>(필요서류)</p> <p>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p> <p>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p>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④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①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법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5.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제5조(확인신청) ④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영리·비영리기업 기준 및 확인 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영리법인기업)이란,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② 계획성·계속성을 가지며 ③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④ 인적·물적 조직이 있어야 함.
 - 영리법인이란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에게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분배(배당)할 수 있어야 하며, 구성원에 대한 이익(잉여금) 배당 여부가 영리성의 본질임.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립시 교부 받은 법인설립허가증이나 정관 등을 제출받아 설립근거 법률을 확인하여 판단.
- (영리개인기업)
 - 개인과세사업자 :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개인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함.

-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 ②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비영리법인 중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인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 비영리법인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021.4.2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영리·비영리사업자 확인 방법

구분	사업	코드	내용	비고
고유 번호증	개인 및 단체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자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비영리) 신청불가
사업자 등록증 (①②③ - ④⑤ - ⑥⑦⑧⑨⑩)	개인	01~79	개인과세사업자	(영리) 신청가능
		80	개인비영리사업자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89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비영리) 신청불가
		8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법인	90~99	개인면세사업자	(영리) 신청가능
		81,86, 87,88	영리법인의 본점	(비영리) 신청불가*
		82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83	국가, 지자체, 조합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85	영리법인의 지점	(영 리) 신청불가	

* 비영리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대출신청 가능

참고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